즉시 배포용: 2019 년 10 월 1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면적인 새로운 직장 차별 및 괴롭힘 보호가 오늘 발효한다고 발표

새로운 법은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괴롭힘이 "심각한 또는 만연한" 경우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고용 차별의 경우 기밀 유지 요구를 금지

주지사, 신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성희롱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고용주들에게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새로운 법규의 주요 구성요소가 오늘 발효되는 뉴욕의 직장 내 차별 금지 및 성희롱 보호의 범위를 크게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조항은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괴롭힘이 "심각한 또는 만연한" 경우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고용 차별의 경우 기밀 유지 요구를 금지합니다. 이 법안들은 주지사의 2019 년 여성 사법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직장 내 성희롱 문화는 용납할 수 없으며 너무 오랫동안 직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중요한 조치는 마침내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증명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법적 표준을 끝내고 이 역겨운 행동을 겪은 사람들이 더 쉽게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주 전역의 고용주들이 내부 정책을 강화하고 검토하여 직원들이 괴롭힘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학대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할 때입니다."

오늘 10 월 11 일에 발효되는 조항은 직원의 성희롱을 포함한 괴롭힘이 고용주에 대한 실행 가능한 행동을 구성하기 위해 "심각한 또는 만연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국내 근로자와 모든 계약자, 하도급 업자, 벤더, 컨설턴트 및 직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이들을 포함하도록 직장 차별의 모든 형태에 대한 보호를 확장합니다. 오늘 발효되는 추가 조항은 개인과 변호사가 고용 차별 사례에서 재정적 보상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밀성을 직원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 고용 차별 합의의 기밀 유지 요건을 금지하며, 모든 기밀 요건은 일반적인 영어로 작성되며, 해당되는 경우 직원의 모국어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를 바꾸고 직장 내를 비롯하여 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성희롱을 근절하고 생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보장하는 뉴욕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뉴욕은 이러한 활동에서 국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본 법안은 여성 권리를 신장하고 완전한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커미셔너 Angela Fernandez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성희롱과 차별이 없는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변화와 함께 '심각한 또는 만연한'이라는 기준의 폐기와 연방 인권의 롤백과 관계없이 인권법(Human Rights Law)이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엄청난 진전입니다.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은 이러한 중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최대한 권한을 사용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 광범위한 개혁을 자신의 2019 년 여성 사법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로 처음 제안했으며, 회계연도 2020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에서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입법부가 이 계획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입법 심의회가 11 일 남은 상황에서 주지사는 "여성 사법 어젠다: 지금이 기회"(Women's Justice Agenda: The Time Is Now) 캠페인을 시작하여 세션이 완료되기 전에 입법자들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들은 Cuomo 주지사가 작년에 회계연도 2019 예산(FY 2019 budget)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성희롱 방지 종합 법안에 서명한 조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종합 법안은 뉴욕주의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계약자, 하도급 업자, 벤더, 컨설턴트, 기타 직장 내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도록 직장 보호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성추행 예방 정책 및 훈련을 채택해야 하며 2019 년 1 월 자로 모든 주 계약자들이 성추행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모든 직원을 훈련시킨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인권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hr.ny.gov/sexualharassmen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